[2019. 3. 28 개정]

가스냉방 장려금 세부 집행지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가스냉방 보급에 지원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이라 한다)의 집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가스냉방 보급 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전력기금 지급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및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냉방설비”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가스엔진 구동식 히트펌프(GHP)를 말한다.
2.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이하 “설치장려금”이라 한다)”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설비를 신규(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설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3.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이하 “설계장려금”이라 한다)” : 설치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가스냉방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하여 설계한 설비설계사무소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4. “설비설계사무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해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설비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와 기술사 자격을 가진 설계사무소를 말한다.
5. “성적계수(COP, IPLV)확인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말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대상이 아닌 가스냉방설비의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고효율시험기관(이하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결과성적계수와 정격성적계수가 상이한 경우, 결과성적계수 적용)를 말한다.
6. “완성검사일” : 장려금 지급대상의 가스냉방설비가 도시가스사업법상 완성검사 대상인 경우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일”을 말

하며, 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개시된 날짜를 말한다.

7. <삭제>
8. “동일장소” : 가스냉방설비가 설치된 동일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장소를 말하며, 열원기와 가스냉방설비가 동일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에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들의 소유자가 같고, 같은 사업장 안에 있다면 동일장소로 본다.
9. “전담부서장” : 공사의 직제규정에 의거 본사의 가스냉방 장려금업무를 담당하는 처의 부서장을 말한다.
10. “주관부서장” : 공사의 직제규정에 의거 가스냉방 장려금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지역본부의 부서장을 말한다.
11. “타기관 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포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말한다.

제 2 장 장려금 지급기준

제 4 조 (지급대상) 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장려금 : 이 지침 제3조 제1호의 “가스냉방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설비의 소유주
2.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하여 설계한 이 지침 제3조 제4호의 “설비설계사무소”

제 5 조 (지급액) ① 장려금 지급액은 가스냉방 설비용량과 성적계수에 따라 산정하며, 세부 지급 기준은 매 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지침 제7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사업연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신청기한이 차년도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차년도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③ 장려금 산정 시 백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적용단위) ① 설치장려금 및 설계장려금의 지급금액 산정 시 가스냉방 설비용량은 usRT를, 성적계수는 COP 또는 IPLV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가스냉방 설비용량을 usRT로 환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성적계수(COP, IPLV) 확인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상의 인정기술기준 및 측정방법(냉방능력 시험조건)에 따르며,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종 또는 용량은 해당기기별로 동규정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각각의 성적계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 3 장 장려금 지급절차

제 7 조 (장려금 지급신청) ① 설치장려금 및 설계장려금은 이 지침 제3조 제6호에 따른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이내에(신청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공사 주관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사업 종료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가스냉방 장려금 신청자는 설치된 가스냉방설비가 완성검사 비대상일 경우에 는 설비 소재지 관할 도시가스사가 발행한 도시가스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제출서류) ① 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려금 신청공문(법인) 1부
2. 법인(개인)통장 사본 1부 (원본대조필)
3.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원본대조필)
4. 계좌입금거래약정서 1부 (별지서식 1)

② 설치장려금 신청자는 제1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별지서식 2)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 사본 1부 (원본대조필)
3. 가스냉방설비 구입확인서(단, 신품인 설비의 구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함) 사본 1부 (원본대조필)
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5. 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 (전경 및 명판)
6. 해당 설비 완성검사증명서[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 (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적용받는 설비에 한함, 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인서 제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7. 장려금 수령동의서(집합건물에 한함, 별지서식 4)
8.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에 한함)

③ 설계장려금 신청자는 제1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별지서식 3)
2.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사본 또는 용역확인원) 사본 1부 (원본대조필)
3. 가스냉방설비 장비일람표, 배관평면도 사본 1부 (원본대조필)
4.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또는 기술사개설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④ 설치장려금 신청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해당 설비에 대한 설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장려금 지급) ① 주관부서장은 장려금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지급 기준 단가에 의거하여 장려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신축건물의 경우 준공이 지연되면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대신하여 관청발행 임시사용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장려금 신청 내역에 대하여 별지서식 5에 의거하여 즉시 현장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를 전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려금 지급에 따른 제세금(수수료 포함)은 장려금 수혜자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율 및 납부방법 등은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수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지급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스냉방설비가 시험용이거나 연구용일 경우
2. 기존에 여타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3.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 공급사업자인 경우
4. 타 연료(액화석유가스 등)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한 경우라도 새로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6. BTL(Bild-Transfer-Lease: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 및 BTO(Bild-Transfer-Operate: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일정기간 직접운영 하는 수익형 민간 투자사업) 사업방식 그리고 공공기관이 임대한 건물의 연면적이 1,000m^2 이상일 경우

② 타기관 보조금 지원(일부 또는 전액)에 의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동일 사업기간 내에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 일체는 동일한 설치건으로 간주하여 차감금액을 산정한다.

제 4 장 사후관리

제 11 조 (사후관리) ① 장려금을 받은 자가 거짓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장려금 실제 반환 일까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반환할 자에게 장려금 반환요청 공문 발송일로부터 15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 장려금을 받은 자는 공사 또는 정부로부터 가스냉방설비의 설치 및 운영현황 등의 조사를 위한 현장 입회 통보 또는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작성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가스냉방 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2019. 3. 28)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2018년에 설치된 가스냉방설비 중 이 지침 상의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지침 공고일 이전에 신청된 가스냉방설비에 대한 장려금도 본 가스냉방 장려금 세부 집행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별지서식 1]

계좌 입금 거래 약정서

【신규 □, 변경 □】

한국가스공사

상 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법인번호) 개 인 (생년월일)	
업태 / 종목	/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Tel Fax
주 소	(우)		
예 금 주 명		약정자와의관계	
은 행 / 계 좌 번 호	은행 / 계좌번호 — —		

[약 정 사 항]

○ 본 신청서상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시 서면으로 한국가스공사에 변경 등록 신청합니다.
○ 이체금액 착오발생시, 한국가스공사는 예금주의 동의 없이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약정서에 명시된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에 의하여 대금을 계좌입금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한국가스공사와 발생한 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 거래에 대한 입금처리 및 이와 관련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세 등 각종 세무 신고 및 업무수행 관련 문제발생시 연락

○ **수집이용항목**
(필수항목) :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번호, 고유식별정보, 법인번호(생년월일),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선택항목) : 업태/종목, 전화.팩스번호, 약정자와의 관계

○ **이용 보유기간** : 특정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62조(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거래완료 후 최장 10년간 보관. 다만, 채권·채무 잔존 시에는 채권·채무 정산 시까지

○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당사의 상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 동의시 대금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필수항목 및 선택항목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법정대리인 동의서]

○ 만 14세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에 의거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습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약정자 (사업주의 경우 대표자를 기재) (인) (통장거래날인 또는 서명)

[제출서류] ① 계좌입금 거래약정서 ② (개인)신분증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③ 통장사본

[별지서식 2]

* 한국가스공사 작성란 *
접수일 : 20 . .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신청자명 (법인명)		담당자 회사 전화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휴대폰 번호	
정보 제공 동의	• (이용목적) 가스냉방 장려금 수혜자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 (이용항목) 상호, 담당자명,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당사의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급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이용항목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설치건물 내역

건 물 명			
주 소			
건 물 규 모	연면적 ㎡	용 도	

3. 가스냉방설비 설치현황

구 분	모델명	용량*대수	기기 일련번호	제작사	성적계수 (COP/IPLV)
가스히트펌프 (GHP)		RT 대			(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RT 대			( )
기기구매비용	• 기기 구입비 : (VAT제외) • 설 치 사 유 : 신규( ), 증설( ), 교체( )				
신청금액	• 가스히트펌프(G H P) : • 직화흡수식냉온수기 : • 합 계 :				
완성검사 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사유 :)				
완성검사일	년 월 일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예외) 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 개시일 기재**				
타기관 보조금 지원여부	☐ 지원(지원금액: 원) ☐ 미지원				

상기와 같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고 귀 공사에 가스냉방 설치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며, 허위로 장려금을 신청·수령 시에는 환불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한국가스공사 귀중

[별지서식 3]

* 한국가스공사 작성란 *
접수일 : 20 . . .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설계사무소명		담당자 회사 전화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휴대폰 번호	
정보 제공 동의	• (이용목적) 가스냉방 장려금 수혜자 대상 고객만족도 조사 • (이용항목) 상호, 담당자명,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당사의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급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이용항목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주 소			
기술사명			
면허 및 자격증 번호			

2. 설치건물 내역

건 물 명	
주 소	

3. 가스냉방설비 설치현황

구 분	모델명	용량*대수	기기 일련번호	제작사
가스히트펌프 (GHP)		RT 대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RT 대		
완성검사일	년 월 일 (검사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예외) 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 개시일 기재			

상기와 같이 가스냉방설비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귀 공사에 가스냉방 설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며, 허위로 장려금을 신청·수령 시에는 환불은 물론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한국가스공사 귀중

[별지서식 4]

[집합건물]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수령동의서

■ 가스냉방설비 설치 건물 내역

건 물 명		냉 방 설 비 소 유 주 명	□ 공동 □ 개별	
소 재 지				
설 비 용 량	총 RT	설 비 종 류	□ 흡수식	□ GHP

※ GHP식 설비이며 개별 설비소유인 경우 하단의 위임인(동의자)란 비고에 설비 용량(RT) 기입

■ 장려금 수령 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 권한 위임 사항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 및 수령에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수임인(대표자)에게 위임하며, 동 권한의 위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분쟁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 수임인(대표자)

성 명		직위(직책)	
주 소		전화번호	

○ 위임인(동의자)

성 명	연락처	인감날인	비고	성 명	연락처	인감날인	비고

한국가스공사 귀중

[별지서식 5]

가스냉방장려금 신청 현장 조사표

접수일 : 20 . . .

<table>
<tr><td colspan="3">설 치 자
(법인명)</td><td colspan="5">(인)</td><td>비고</td></tr>
<tr><td colspan="3">설치건물 주소</td><td colspan="5"></td><td></td></tr>
<tr><td colspan="3">수검자 명</td><td colspan="3">(인)</td><td>연락처</td><td colspan="2"></td><td></td></tr>
<tr><td>기기
종류</td><td>용량
(RT)</td><td>성능
계수</td><td>대수</td><td>총용량
(RT)</td><td>제작사</td><td>모델명</td><td colspan="3">기기일련번호</td></tr>
<tr><td></td><td></td><td>( )</td><td></td><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td><td></td><td>( )</td><td></td><td></td><td></td><td></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5">조
사
내
용</td><td colspan="2">냉방설비 설치여부</td><td colspan="4">☐ 적합 ☐ 부적합</td><td></td></tr>
<tr><td colspan="2">냉방설비 설치수량</td><td colspan="4">☐ 적합 ☐ 부적합</td><td></td></tr>
<tr><td colspan="2">고효율기자재인증서와
실외기 명판 일치여부</td><td colspan="4">☐ 적합 ☐ 부적합</td><td></td></tr>
<tr><td colspan="2">도시가스 공급여부</td><td colspan="4">☐ 적합 ☐ 부적합</td><td></td></tr>
<tr><td colspan="2">기타사항</td><td colspan="4"></td><td></td></tr>
<tr><td colspan="3">조사일시</td><td colspan="2">20 . . .</td><td>조사자</td><td colspan="3">지역본부
(인)</td></tr>
</table>

※ 가스냉방 장려금 세부 집행지침에 의거 제출서류 및 실사 확인 내용과 달리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가스냉방 장려금 세부 집행 지침” 제4장 제11조에 따르며 설계사에 지급되는 설계장려금 또한 환원 조치하는 데에 책임 질 것을 확인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지역본부